

웅지세무대학교	학생간행물발간규정	문서번호	5-2-07(E)-0
		제정일자	05.01.01
		최근개정	15.04.01
		주관부서	학생처
		관리부서	-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학생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생 단체나 학생이 정기, 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여 교내에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간행물 발간 및 배포

제2조(간행물의 분류) 간행물을 발간하는 종류에 따라 학생 간행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교단위의 학생 간행물
2. 학과(부)단위의 학생 간행물
3. 단체단위의 학생 간행물
4. 개인단위의 학생 간행물

제3조(전교단위의 학생 간행물) ① 전교단위의 학생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에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04.01.>

② 소속 학과(부)장을 그 지도교수로 한다.

③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거쳐서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1.>

제4조(학과(부)단위의 학생 간행물) ① 학과(부)단위의 학생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에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 및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04.01.>

② 당해 단체 지도교수를 그 지도교수로 한다.

③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거쳐서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1.>

제5조(단체단위의 학생 간행물) ① 단체단위의 학생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에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 및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04.01.>

② 당해 단체 지도교수를 그 지도교수로 한다.

③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거쳐서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1.>

제6조(개인단위의 학생 간행물) 본 대학 재학생에게 배포할 것을 목적으로 학생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교수를 거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예산) ① 모든 학생 간행물의 경비는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 집행은 지도교수의 허가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발간허가) 학생 간행물의 발간허가는 발간 추천원을 학생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5.04.01.>

제9조(인쇄소의 지정) 학생 간행물의 발간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교학처장은 인쇄소를 지정한다.

<개정 2015.04.01.>

제10조(편집, 인쇄의 지도) ① 간행물의 편집과 인쇄과정은 간행물별 지도교수가 각각 책임지고 지도한다.

② 인쇄부수는 소속 학생 수를 참작하여 지도교수가 적절히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배포) 모든 학생 간행물은 배포 전에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01.>

제3장 학생 홍보물 제작 및 게시

제12조(정의) 홍보물이라함은 교학처장으로부터 홍보물 제작(발간) 및 배부허가를 받고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는 각종 광고, 공고, 기타 게시물과 현수막을 말한다. <개정 2015.04.01.>

제13조(홍보물 게시범위)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2. 본 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행사하는 행사

②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준하는 행사

2. 학과(부), 학년 단위 및 학생 단체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외부단체 행사를 위한 현수막의 게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학술, 체육에 관한 행사 및 취업홍보, 기타 본 대학 학생들에게 특별히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현수막일 때는 허가할 수 있다.

④ 게시물의 게시는 외부단체 대표자의 의뢰원을 지참하고 홍보물에 검인을 받은 단체에 한하여

교학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4.01.>

⑤ 본 대학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고교 동창회, 지방 향우회)이 친목행사를 위하여 연고가 있는 특정 교수로부터 행사지도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교학처장은 게시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4.01.>

제14조(홍보물의 제작(발간) 및 배부원 제출절차) 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홍보물 제작(발간) 및 배부 허가원에 홍보물 내용원고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04.01.>

② 교학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허가원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하며, 허가된 단체에 대하여는 허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04.01.>

③ 허가서를 발부받은 단체는 홍보물을 제작한 다음 교학처 학생팀의 검인을 받아 게시한다. <개정 2015.04.01.>

제15조(홍보물 게시시간) ① 홍보물의 게시는 지정된 장소에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게시하며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② 행사 주관단체의 대표학생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하여 홍보물을 게시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 및 책임) ① 학생이 허가를 얻어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상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교학처장의 승인 없이 게시 또는 부착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 <개정 2015.04.01.>

제17조(대외홍보) 본 대학 학교행사를 다른 대학(교)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은 홍보물에 검인을 날인하고 다른 대학(교) 또는 외부단체 대표자에게 게시허가를 의뢰하는 의뢰원을 발부한다. <개정 2015.04.01.>

제1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4.01.>

부 칙 <1판-제정/시행 2005.01.0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07.01.0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13.01.0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판-개정/시행 2015.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4항제5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의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개정하다
2. 제14조제3항의 "학생과"를 "교학처 학생팀"으로 개정하다
3. 제8조, 제18조 "학생지도위원회"를 "학생위원회"로 개정하다